

201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억 3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 6억 5천 1백만원
- 실제수납액 : 6억 4천 8백만원
- 미수납액 : 3백만원
- 결손처분 : 0원
- 다음연도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비율은 99.5%(전년도 99.5%)임.

<201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639,086	650,540	647,752	2,788	99.5
세외수입	15,109	26,563	23,775	2,788	86.5
경상적세외수입	3,063	4,264	4,036	228	100
재산임대수입	3,063	3,063	3,063	0	100
공유재산임대료	3,063	3,063	3,084	0	100
이자수입	0	1,202	973	228	80.9
기타이자수입	0	1,202	973	228	80.9
임시적세외수입	12,046	22,298	19,739	2,559	88.5
기타수입	12,046	22,298	19,739	2,559	88.5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9	22,265	19,706	2,559	88.5
그외수입	1,677	33	33	0	100
국고보조금	623,977	623,977	623,977	0	1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34억 9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34억 9천 7백만원
- 지출액 : 33억 3천 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1억 6천 7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7%(전년도 1.9%)임.

< 201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산		3,496,729	3,330,026	0	166,702	4.7
사업예산계		3,342,542	3,188,829	0	153,712	4.5
비상 대비 · 민 방 위	을지연습 실시	305,638	298,551	0	7,087	2.3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50,900	45,433	0	5,467	10.7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4,165	34,165	0	0	10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21,480	121,480	0	0	100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347,000	347,700	0	0	10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200	59,382	0	3,818	6.0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	235,000	234,937	0	63	0.02
	사회복무요원 관리	561,569	436,165	0	125,404	22.3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국비)	45,000	45,000	0	0	100
	민방위대 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운영비(국비)	629,954	629,954	0	0	100
	민방위대 교육훈련 -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국비)	30,875	30,875	0	0	1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6,810	119,146	0	7,664	6.0
	민방위 교육장 운영	176,447	172,236	0	4,211	2.3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47,667	47,667	0	0	100
	민방위 장비 보급 · 확충	37,737	37,737	0	0	1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국비)	529,100	529,100	0	0	100
일반예산계		154,187	141,198	0	12,989	8.4
기본경비		153,487	140,711	0	12,776	8.3
재무활동		700	487	0	213	30.4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1건, 2,333,000원

- 민방위교육운영비 시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족분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천원, %)

사업명	보조금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총 계	1,262,929	623,977	638,952	1,232,613	609,651	622,962	30,316	14,326	15,990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28,000	28,000	0	28,000	28,000	0	0	0	0
민방위대 교육훈련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45,000	38,000	7,000	45,000	38,000	7,000	0	0	0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660,829	313,777	347,052	643,749	305,582	338,167	17,080	8,195	8,885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29,100	244,200	284,900	515,864	238,069	277,795	13,236	6,131	7,105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건물 2,562.35㎡ 4억 5천 7백만원,

- 기타 2건 3백만원,

총 4억 9천 1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491	0	0	491	
행정 재산	계	491	0	0	491
	공용재산	491	0	0	491
	공공용재산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0	0	0	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비상기획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73개, 현재액 3억 6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84	3		3		14	14	73
	금액	316	31		31		41	41	306
일반회계	수량	84	3		3		14	14	73
	금액	316	31		31		41	41	306

Ⅱ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시·도비반환금수입 예산 운용 철저

- 비상기획관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에 대해 전년도(2016년)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징수결정액)과 ‘시·도비반환금수입(수납액)’의 차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보조예산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

(단위 : 원)

집행연도	시비집행잔액(A) -징수결정액-	반납연도	시비반납액(B) -수납액-	차액(A-B)
2011	5,676,270	2012	6,537,270	△ 861,000
2012	12,490,554	2013	11,144,900	1,345,654
2013	3,555,960	2014	3,973,960	△ 418,000
2014	25,351,860	2015	20,280,330	5,071,530
2015	18,475,160	2016	15,227,350	1,213,930
2016	22,265,980	2017	19,706,120	2,559,860

- 시·도비반환금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¹⁾)에 따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결과에 맞추어 적기에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은 비상기획관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부과에서 징수에 이르는 과정이 엄정하지 못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자치구의 반납 해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비상기획관은 적기 반환을 통한 세입처리를 위해 보조금의 집행·심사·정산검사 및 반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노력과 함께 보조금 운영방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같은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4항
- 결산절차
 -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산검사(조례 제29조 내지 제30조)
- 반환금 반납절차
 - 정산 후 반환금은 재무과(국비), 세무과(시비)에 고지서 발급의뢰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 12월말까지 잔액 반납
 - 국비(구 → 시 → 국고 반납) · 시비(구 → 시 반납) : 시세입처리

나. 세입예산 편성 과목구분 및 결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예산과목에 계상하도록 개정(2014.7., 행정안전부)되었으나, 비상기획관은 2017년도까지 세입예산에 '기타이자수입' 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거나 예산액 없이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2)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로, 향후 세입예산 수입의 성질에 따라 세부 분류에 맞는 세입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 기타이자수입 처리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비고
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	0	973,490	보조금 정산 이자반납 수입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015년도 이후 ‘그외수입’ 처리 건 중 ‘기타이자수입’ 계상 대상 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징수결정일	수납액	과세내용
합계		27건	904,540	
1	2017	2017.01.10	33,000	2016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2	2016	2016.01.11	24,740	2015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등 반납
3	2016	2016.04.25	282,140	2015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이자및연체료
4	2016	2016.09.30	35,330	2014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5	2016	2016.09.30	4,79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6	2016	2016.09.30	1,54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7	2016	2016.09.30	14,28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8	2016	2016.12.09	42,80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9	2016	2016.12.20	101,35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하반기 추가)
10	2015	2015.7.20	25,59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1	2015	2015.7.20	38,78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2	2015	2015.7.20	21,61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3	2015	2015.7.20	5,2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4	2015	2015.7.20	8,56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5	2015	2015.7.20	10,21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6	2015	2015.7.20	11,66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7	2015	2015.7.20	25,4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8	2015	2015.7.20	3,7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9	2015	2015.7.20	14,1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0	2015	2015.7.20	33,5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1	2015	2015.7.20	16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2	2015	2015.7.20	8,67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3	2015	2015.7.20	490	2014년 민방위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4	2015	2015.8. .	140	2014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시비집행잔액 이자
25	2015	2015.8. .	140	2014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시비집행잔액 이자
26	2015	2015.9.17	138,320	14년 서울시 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27	2015	2015.10.14	18,140	2013년 민방위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

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관리 철저

-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지방회계법」³⁾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으로,
- 기존 재무국(세무과)에서 비징수관의 ‘지난연도수입’을 일괄 결산함에 따라 부서별 결산서에 ‘지난연도수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세입결산서의 연도별 연속성 부재 문제가 매년 발생한다는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2017회계 연도부터 비징수관 부서의 ‘지난연도수입’을 각 소관부서에서 결산하도록 변경하는 방침⁴⁾을 시행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⁵⁾에서는 ‘지난연도 수입’ 등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음.
- 비상기획관은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연도수입’ 과목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관리를 하지 않고, 미수납액 실태 파악 및 징수노력 등을 하지 않았는바, 비상기획관의 조속한 ‘지난연도수입’ 관리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비상기획관 결산상 미수납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2017	639,086	650,540	647,752	2,788	99.5
2016	640,928	651,739	648,486	3,253	99.5
2015	598,682	622,273	616,150	6,123	99.0

3)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4)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2016.8.18.)

5)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라.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 과다 차이 발생

- 비상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15,109천원) 대비 결산액(23,775천원) 비율은 157.4%로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보면,
 - 정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예산 편성 없이 수납액(973천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예산(10,369천원) 대비 결산률(19,706천원)이 190.0%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1,677천원) 대비 결산률(33천원)이 2.0%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당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적절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고,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

<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세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비율(%) (B/A)
세외수입	15,109	23,775	157.4
경상적세외수입	3,063	4,036	131.8
재산임대수입	3,063	3,063	100
공유재산임대료	3,063	3,084	100
이자수입	0	973	-
기타이자수입	0	973	-
임시적세외수입	12,046	19,739	163.9
기타수입	12,046	19,739	163.9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9	19,706	190.0
그외수입	1,677	33	2.0

2. 세출결산

가. 예산 과다 불용사업의 문제

- 비상기획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3,497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67백만원)은 4.7%(전년도 1.9%)로 전년도 대비 2.8%가량 증가하였고, 서울시 전체 규모(2.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통계목별 20%이상 집행잔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46,034	421,885	124,149	22.7	병무청에서 당초 계획인원보다 축소 배정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행사살비 보상금	12,900	8,649	4,251	32.9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국비 증액교부로 사비 비중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기본경비	국내여비	49,000	36,224	12,776	26.0	통합 점검 실시로 개별출장 횟수 감소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	487	213	30.4	2016년도 반납액 265천원이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미집행

1)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은 서울시 및 사업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5억6천2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억2천5백만원)이 2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중식비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과다 불용(집행잔액 1억2천4백만원, 불용률 22.7%)으로 보여짐.
- 비상기획관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당초 계획 보다 적게 배정(요청 88명, 배정 64명, △24명)’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사업소 사회복지요원은 536명으로 그 중 일반행정지원 복무자 120명에 대한 봉급 등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음.
-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 중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따른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2018년도 사회복지요원 평균 기본급이 86.7%(2017년 19만6천원에서 2018년 36만6천원)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봉급’ 예산 또한 70% 증액(4억3천9백만원) 편성 되는 등
 - ※ 일반행정지원 업무 복무자는 특별회계 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지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비상기획관은 사회복지요원 수급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회복지요원 복무 현황 >

(단위:명, 2016. 12.31 기준)

계	환경보호·감시	재난·안전	행정지원	환자구호	경비지원
536	243	100	120	51	22

<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	703	-	-	-
2017년	562	436	125	22.3
2016년	505	485	20	4.0
2015년	476	427	49	10.3

2)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관련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민방위 훈련 관련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과목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워크숍 운영비(9,900천원)와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비(3,000천원)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12,900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4,251천원)이 3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행사실비보상금 편성 내역>

부서·정책·단위·세부	2016	2017	증 감	예산과목 및 내역	(단위: 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00-301-09)	행사실비보상금	12,900
			○ 민방위 교육, 화생방 담당공무원 등 워크숍	=	9,900
			· 급량비	7,000원*240명*5식 =	8,400
			· 입장료 등 기타	300,000원*5회 =	1,500
			○ 민방위 창설기념 문화행사비	=	3,000
			· 문화공연 등 행사추진	3,000,000원*1회 =	3,000
					비상기획관

- 집행잔액은 민방위 교육·화생방 담당공무원 등 워크숍의 축소 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워크숍 수요나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 편성내역 그대로 재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비상기획관의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행정운영경비 관련

- “기본경비”중 ‘국내여비’의 예산현액(49,000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2,776천원)은 26.1%(전년도 31.4%)로 최근 5년 연속 꾸준히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비상기획관은 ‘자치구 통합점검으로 인한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여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결산 승인안 관련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와 같고, 이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반복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비상기획관은 매년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매년 발생하는 높은 불용률을 감안한 적정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비상기획관 소관 국내여비 현황 추이> (단위: 천원)

연 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2017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49,000	36,224	12,776	26.1
2016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49,000	33,626	15,373	31.4
2015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80	40,741	11,058	21.3
2014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80	42,177	9,622	27.7
2013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00	40,742	11,058	21.3

4) 보전지출 / 반환금 및 기타 /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 “반환금 및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을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예산현액(700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213천원)은 30.4%(전년도 100%) 수준임.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2017	700	487	213	30.4
		2016	50	0	50	100
		2015	50	5	45	90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국고 반납시기
재교부년도	이자발생 회계연도					
2017	2018	623,977	609,621	14,326	미정	(2019년)
2016	2017	627,477	611,509	15,967	265	2018년
2015	2016	564,279	548,841	15,438	255	2017년

- 시·도에는 국고보조금 자치구 반환금을 세입조치 할 과목이 없으므로 자치구 반환금은 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하고,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은 세입(기타이자 수입)·세출(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편성 후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세출예산에 이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비상기획관은 반환액이 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일부 미집행하였고, 연도별 이자반납액·예산현액·지출액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정산 및 반납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의 정산 및 회계처리에 있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의 우선 징수 대상 채권임을 감안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6)」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나. 민간경상보조금(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7)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8))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 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바, 예산현액(235,500천원) 대비(집행잔액 63천원) 높은 집행률(99.9%)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사업정산 내용을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참가 희망자 증가로 당초 예산(149백만원) 대비 12.4%(18,457천원) 초과하여 변경 사용함으로써,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10,528천원), ‘향군안보포럼’(7,623천원), ‘향군안보교육’(369천원) 경비의 배분을 감액 변경사용 하였는바, 보조금의 산정 당시부터 수요조사 및 면밀한 사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 안보포럼	향군 안보교육
예 산 액	235,000	148,500	30,000	27,000	29,500
예산변경	0	18,457	△10,528	△7,623	△369
변 경 후 예 산	235,000	166,957	19,472	19,376	29,131

※ 지방보조금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총 보조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2017년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총 집행액(234,937천원) 중 인건비(26,486천원)를 제외한 집행액(208,451천원)은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결제비율(84백만원)이 40%로 저조한바 관련 지침(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7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향후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제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사업에 대한 전 자치구 참여(2017년도 1개구(도봉구) 미참여), ‘향군안보포럼’ 및 ‘향군안보교육’ 행사의 재향군인회 회원 편중 문제 및 내용상 편향적인 안보관에 따른 운영 문제 등에 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나아가 본 사업 내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사업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